“북구민의 건강파트너!
소통하는 북구체육회!”

2025.11.

2025년 도
제 11차 이 사 회
서 면 결 의 결 과

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

제11회 이사회 서면결의 결과보고

정관 제22조(서면결의)에 의거하여 개최한 **제11차 이사회 서면결의**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

❑ 관련근거

○ 정관 제22조(서면결의)

❑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: 2025. 10. 29.(수)~ 31(금) / 3일간

○ 참석인원: 재적이사 32명 중 25명

❑ 회의결과

구 분	안 건		결 과	비 고
의결사항	제1호	북구체육회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	**원안의결**	
	제2호	북구체육회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	**원안의결**	
	제3호	북구체육회 회비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	**원안의결**	
	제4호	북구체육회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	**원안의결**	
	제5호	북구체육회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	**원안의결**	
	제6호	북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(인정단체) 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	**원안의결**	

관련근거

※ 정관 제18조(이사회 구성 및 기능)

제18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① 체육회의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.

② 체육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2. 규정의 제정 및 개정
3.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
4.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상임부회장, 사무국장의 임면동의
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7.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8. 준회원단체·인정단체의 가입승인, 강등 및 제명
9. 그 밖의 중요사항

※ 정관 제2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

제2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※ 정관 제 6조(조직), 제10조(가입 및 탈회 등)

제6조 (조직)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3. '인정단체'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가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.

제10조 (가입 및 탈회 등) ① 제6조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종목단체는 광주광역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체육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.